

## 어획한도 배정량 이전 승인서

이전을 하는 자	성 명	생 년 월 일	
	주 소		
이전을 받는 자	성 명	생 년 월 일	
	주 소		
허 가 번 호	제 - 호	이전 받은 어획한도량	
어업의 종류			
이전의 사유			

「참다랑어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」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참다랑어 어획한도 배정  
량  
이전을 승인합니다.

년 월 일

시도지사  
시장·군수·구청장

